

농공지구 입주안내

상 공 부

I. 농공지구란

농어촌지역에 농어촌소득 증대 및 공업의 유치·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되는 소규모 공업단지

II. 농공지구 지정·조성 및 분양

1. 지정대상지역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

- 행정구역상 군지역(119개, 경기도 제외)
- 농어촌지역으로 고시된 시지역(18개, 경제기획원 고시 제89-6호)

* 도별 지정대상지역

도 별	일반농어촌 (3시 28군)	추가지원농어촌 (15시 42군)	우선지원농어촌 (49군)
강원도	원주군, 춘성군, 횡성군, 홍천군(4)	속초시, 삼척시, 영월군, 철원군, 명주군(5)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삼척군(8)
충북도	진천군, 청원군, 음성군, 괴산군, 증원군(6)	옥천군, 제원군(2)	보은군, 단양군(2)

도 별	일반농어촌 (3시 28군)	추가지원농어촌 (15시 42군)	우선지원농어촌 (49군)
충남도	온양시, 공주시, 연기군, 공주군, 금산군, 천원군, 아산군, 논산군(8)	대천시, 서산시, 서천군, 홍성군, 예산군, 서산군, 당진군, 태안군(8)	부여군, 보령군, 청양군(3)
전북도	-	정주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김제군, 익산군, 옥구군, 임실군(8)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남원군, 순창군, 정읍군, 고창군, 부안군(8)
전남도	광양군, 여천군(2)	나주시, 승주군, 장성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완도군, 화순군, 나주군, 담양군(10)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광군, 진도군, 신안군(10)
경북도	영천시, 영천군, 달성군, 경산군, 칠곡군, 선산군(6)	김천시, 영주시, 상주시, 점촌시, 안동군, 영일군, 군위군, 경주군, 성주군, 금릉군, 상주군, 문경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9)

도 별	일반농어촌 (3시 28군)	추가지원농어촌 (15시 42군)	우선지원농어촌 (49군)
경남도	의창군, 양산군, 김해군, 울주군, 거제군(5)	영풍군, 고령군(14) 삼천포시, 충무시, 밀양시, 창녕군, 밀양군, 사천군, 진양군, 하동군, 통영군, 함안군(10)	의령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함천군(7)
제주도	-	-	남제주군, 북제주군(2)
합 계	31	57	49

* 단, 다음 지역은 제외(령 제7조)

- 공업단지가 있는 읍·면
- 산업기지개발구역 중 중화학공업기지가 있는 읍·면
- 공업배치법에서 규정한 이전축진지역과 제한경비지역
-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와 인접한 읍·면

2. 지정규모 한도

가. 시·군별 지정한도

- 일반농어촌 : 합계 10만평
- 추가지원농어촌 : 합계 20만평
- 우선지원농어촌 : 합계 30만평

나. 지구별 지정규모

- 9만m²(27천평) 이상 25만m²(77천평) 이하
- 우선지원농어촌의 경우 당해지역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구별 규모의 상한제한을 완화

* 시군별 지정현황 : 별첨('90. 1. 31 현재)

3. 지구 입지여건

- 지정가능 용도지역
 - 국토이용관리법상 공업지역·개발촉진지역·산림보전지역·경지지역
 -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준공업지역·녹지지역
- 농지·초지·임야편입

- 농지·초지·임야의 편입비율은 100%까지 허용

- 경지정리된 우량토지는 반드시 제외하여야 하며 우량초지·임야도 제외

입지기준

-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농공단지대상지역)를 엄격 준수

- 동일생활권내에 타공단(기 개발 또는 계획예정포함)이 없을 것.

상수원·농업용수원 보호

- 상수원보호를 위하여 농공단지의 배수가 농업용수로와 동일수계로서 연결되거나 될 수 밖에 없는 지역은 제외

기 타

- 평균 2m 이상 성토필요지역, 고저차 20m 이상, 경사도 10%이상 지역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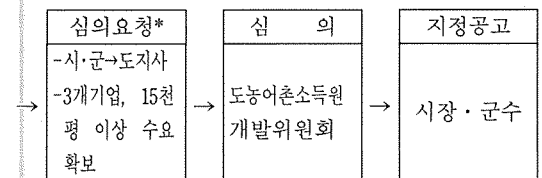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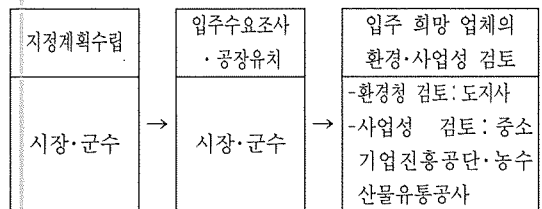
- 진입도로가 지정면적기준 10천평당 100m 초과지역, 하폭 100m 이상으로 교량건설 필요지역은 제외

- 수산자원보전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

4. 지정 및 조성권자 : 시장·군수

5. 지정절차 및 조성지원

가. 지정절차



* 환경성·사업성 검토결과 입주적합기업 3개 이상임.

나. 조성지원

(단위 : 천원)

	일 반 농어촌	추가지원 농 어 촌	우선지원 농 어 촌
· 국비보조/평	10(-)	10(10)	30(10)
· 국비용자/평	10(-)	20(10)	20(10)
· 지방비보조/평	5(-)	5(5)	5(5)
합 계	25(-)	45(25)	55(25)

- 1) 지원대상면적은 부대시설면적을 제외한 구역내면적에 국한함.(구역변경은 금지)
- 2) 잔여소요는 지방비용자(기채)로 충당함.
- 3) 대기업입주 단지에는 ()와 같이 지원내용을 변경

· 공동 오 · 폐수처리장

(%)

	일 반 농어촌	추가지원 농 어 촌	우선지원 농 어 촌
합 계	100	100	100
· 국비보조	30	50	70
· 기금용자	70	50	30

- 1) 기금용자조건은 연 7.0%로서 3년거치 10년 균분상환임.

6. 분 양

- 분양가격 : 토지매입비 + 지구조성비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에 따라 시장 · 군수가 결정
- 분양방법 : 일시분양, 상환분양(5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대여
- 환매권 부여 : 시장 · 군수는 일시분양은 5년 내 전매시 또는 입주승인 취소시, 상환분양은 분양금 완납전 전매시 환매 (도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조례)

시 · 군별 농공지구 지정현황

(강원도)

(단위 : 평)

시·군별	지역구분	지정현도	지정면적 (지구수)	잔여면적	비 고
평 창군	우선지원농어촌	300,000	31,990(1)	268,010	
정 선군	〃	300,000	-	300,000	
화 천군	〃	300,000	-	300,000	
양 구군	〃	300,000	-	300,000	
인 제군	〃	300,000	-	300,000	
고 성군	〃	300,000	10,300(1)	289,700	

시·군별	지역구분	지정현도	지정면적 (지구수)	잔여면적	비 고
양 양군	〃	300,000	-	300,000	
삼 척군	〃	300,000	32,280(1)	267,720	
속 초시	추가지원농어촌	200,000	-	200,000	
삼 척시	〃	200,000	-	200,000	
영 월군	〃	200,000	-	200,000	
철 원군	〃	200,000	38,944(1)	161,056	
명 주군	〃	200,000	37,930(1)	162,070	
춘 성군	일반지원농어촌	100,000	50,248(2)	49,752	
홍 천군	〃	100,000	47,754(2)	52,246	
횡 성군	〃	100,000	99,973(2)	27	완 료
원 주군	〃	156,176	156,176(1)	-	완 료

(충청북도)

시·군별	지역구분	지정현도	지정면적 (지구수)	잔여면적	비 고
보 은군	우선지원농어촌	300,000	20,000(1)	280,000	
단 양군	〃	300,000	19,046(1)	280,954	
옥 천군	추가지원농어촌	200,000	153,020(3)	46(980)	
계 원군	〃	200,000	91,500(3)	108,500	
청 원군	일반지원농어촌	100,000	104,000(3)	-	완 료
영 동군	〃	100,000	98,712(2)	--	완 료
진 천군	〃	100,000	101,327(4)	-	완 료
괴 산군	〃	100,000	96,682(4)	-	완 료
음 성군	〃	100,000	108,254(3)	-	완 료
증 원군	〃	100,000	92,168(2)	-	완 료

(충청남도)

시·군별	지역구분	지정현도	지정면적 (지구수)	잔여면적	비 고
부 여군	우선지원농어촌	200,000	38,000(1)	262,000	
보 령군	〃	300,000	51,000(1)	249,000	
청 양군	〃	300,000	102,000(2)	198,000	
서 산시	추가지원농어촌	200,000	-	200,000	
서 천군	〃	200,000	166,000(2)	34,000	
홍 성군	〃	200,000	90,000(2)	110,000	
예 산군	추가지원농어촌	200,000	56,000(1)	144,000	
태 안군	〃	200,000	-	200,000	
서 산군	〃	200,000	90,000(1)	110,000	
당 진군	〃	200,000	96,000(3)	104,000	
공 주시	일반지원농어촌	100,000	90,000(1)	10,000	완 료
대 천시	〃	200,000	33,000(1)	167,000	
온 양시	〃	100,000	88,000(1)	12,000	완 료
금 산군	〃	100,000	35,000(1)	65,000	
연 기군	〃	100,000	100,000(3)	-	완 료

시·군별	지역구분	지정한도	지정면적 (지구수)	잔여면적	비 고
공주군	〃	100,000	104,000(4)	-	완료
논산군	〃	100,000	99,000(3)	1,000	완료
아산군	〃	100,000	108,000(4)	-	완료
천원군	〃	100,000	97,000(3)	3,000	완료

(전라북도)

시·군별	지역구분	지정한도	지정면적 (지구수)	잔여면적	비 고
진안군	우선지원농어촌	300,000	16,000(1)	284,000	
무주군	〃	300,000	-	300,000	
장수군	〃	300,000	16,300(1)	283,700	
남원군	우선지원농어촌	300,000	15,400(1)	284,600	
순창군	〃	300,000	24,200(1)	275,800	
정읍군	〃	300,000	62,400(1)	237,600	
고창군	〃	300,000	30,200(1)	269,800	
부안군	〃	300,000	23,400(1)	276,600	
정주시	추가지원농어촌	200,000	52,000(1)	148,000	
남원시	〃	200,000	-	200,000	
김제시	〃	200,000	153,000(2)	47,000	
완주군	〃	200,000	116,000(1)	84,000	
김제군	〃	200,000	22,000(1)	178,000	
익산군	〃	200,000	39,800(1)	160,200	
옥구군	〃	200,000	128,200(2)	71,800	
임실군	〃	200,000	52,700(2)	147,300	

(전라남도)

시·군별	지역구분	지정한도	지정면적 (지구수)	잔여면적	비 고
곡성군	우선지원농어촌	300,000	153,000(1)	147,000	
구례군	〃	300,000	-	300,000	
고흥군	〃	300,000	15,090(1)	284,910	
보성군	〃	300,000	41,745(1)	258,255	
장흥군	〃	300,000	-	300,000	
강진군	〃	300,000	17,002(1)	282,998	
해남군	〃	300,000	30,796(1)	269,204	
영광군	〃	300,000	-	300,000	
진도군	〃	300,000	-	300,000	
신안군	〃	300,000	-	300,000	
나주시	추가지원농어촌	200,000	62,884(1)	137,116	
담양군	〃	200,000	56,721(1)	143,279	
승주군	〃	200,000	30,000(1)	170,000	
화순군	〃	200,000	30,000(1)	170,000	
영암군	〃	200,000	40,000(1)	160,000	
무안군	〃	200,000	130,000(2)	70,000	

시·군별	지역구분	지정한도	지정면적 (지구수)	잔여면적	비 고
나주군	〃	200,000	27,532(1)	172,468	
함평군	〃	200,000	50,000(1)	150,000	
장성군	〃	200,000	61,421(2)	138,579	
완도군	〃	200,000	-	200,000	
광양군	일반지원농어촌	100,000	-	100,000	
여천군	〃	100,000	-	100,000	

(경상북도)

시·군별	지역구분	지정한도	지정면적 (지구수)	잔여면적	비 고
의성군	우선지원농어촌	300,000	49,000(1)	251,000	
청송군	〃	300,000	-	300,000	
영양군	〃	300,000	-	300,000	
영덕군	〃	300,000	-	300,000	
청도군	〃	300,000	41,000(1)	259,000	
예천군	〃	300,000	37,000(1)	263,000	
봉화군	〃	300,000	-	300,000	
울진군	〃	300,000	-	300,000	
울릉군	〃	300,000	-	300,000	
김천시	추가지원농어촌	200,000	130,000(1)	70,000	
영주시	〃	200,000	38,000(1)	162,000	
상주시	〃	200,000	23,000(1)	177,000	
점촌시	〃	200,000	-	200,000	
안동군	〃	200,000	16,000(1)	184,000	
영일군	〃	200,000	59,000(1)	141,000	
군위군	〃	200,000	116,000(2)	84,000	
경주군	〃	200,000	124,000(4)	76,000	
성주군	〃	200,000	63,000(2)	137,000	
금릉군	〃	200,000	16,000(1)	184,000	
상주군	〃	200,000	59,000(2)	141,000	
문경군	〃	200,000	50,000(1)	150,000	
고령군	〃	200,000	77,000(1)	123,000	
영풍군	〃	200,000	32,000(1)	168,000	
영천시	일반지원농어촌	100,000	108,000(2)	-,000	완료
영천군	〃	100,000	97,000(3)	3,000	〃
달성군	〃	100,000	81,000(2)	19,000	〃
경산군	〃	100,000	-	100,000	
칠곡군	〃	100,000	38,000(1)	62,000	
선산군	〃	100,000	100,000(3)	-	

(경상남도)

시·군별	지역구분	지정한도	지정면적 (지구수)	잔여면적	비 고
의령군	우선지원농어촌	300,000	103,000(2)	197,000	

시·군별	지역구분	지정한도	지정면적 (지구수)	잔여면적	비 고
고성군	〃	300,000	33,341(1)	266,659	
남해군	〃	300,000	17,324(1)	282,676	
산청군	〃	300,000	31,938(1)	268,062	
함양군	〃	300,000	12,206(1)	287,794	
거창군	〃	300,000	16,099(1)	283,901	
합천군	〃	300,000	69,470(1)	230,530	
충무시	추가지원농어촌	200,000	-	200,000	
삼천포시	〃	200,000	31,465(1)	168,535	
밀양시	〃	200,000	-	200,000	
진양군	〃	200,000	23,912(1)	176,088	
함안군	〃	200,000	178,565(4)	21,435	
창령군	〃	200,000	41,150(2)	158,850	
밀양군	〃	200,000	199,994(4)	-	완 료
통영시	〃	200,000	-	200,000	완 료
사천군	〃	200,000	200,607(2)	-	완 료
하동군	〃	200,000	43,717(2)	156,283	
양산시	일반지원농어촌	100,000	100,222(2)	-	완 료
울주군	〃	100,000	40,000(1)	60,000	
김해시	〃	100,000	90,000(1)	10,000	완 료
의창군	〃	100,000	-	100,000	
거제시	〃	100,000	-	100,000	

(제주도)

시·군별	지역구분	지정한도	지정면적 (지구수)	잔여면적	비 고
남제주군	우선지원농어촌	300,000	35,000(1)	265,000	
북제주군	〃	300,000	20,000(1)	280,000	

III. 입주신청대상 및 입주절차

1. 입주신청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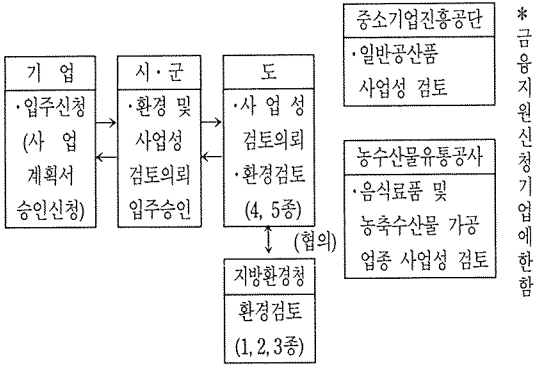
- 일반적 입주신청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창업·이전·분공장·협동화 사업 등 업종규모 제한없음
 - 공해다발업은 제외(환경검토 기준 참조)
- 중점 입주유치 대상기업
 - 창업중소기업
 - 중소기업 협동화사업
 - 대도시 소재 이전공장(비도시형 업종,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이전공장 등)

- 대기기업의 계열기업, 분공장 등
- 식·음료 및 농축수산물 가공공 등
- 입주적격기업 선정시 우선순위 부여
 - 당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큰 업종
 - 당해지역의 부존자원의 활용하는 업종
 - 중소기업의 협동화·근대화 창업승인기업 (별도 사업성검토생략)

〈환경검토기준〉
(입주제한 업종)

- 대기분야
 - 연간 고체연료사용량이 1,000m² 이상인 사업장
 - 특정 유해물질 배출업종(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 참조)
 - 폐기물처리업종
 - 사업용 화학물질 제조시설(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2 참조)
 - 기타 화학제품 제조시설(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2 참조)
 - 염색시설
 - 제1차 금속제조시설
 - 석유정제시설
 - 종이제조시설
 - 가죽 및 모피제조시설(가죽 및 모피를 이용하는 가공시설은 가능)
- 기 타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업종 중 농공단지입주시 각종 방지시설을 하여도 현저하게 농촌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큰 업종에 대하여는 입주를 금지(예컨대 공장 규모에 비하여 공해방지시설비가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입주금지 대상시설 중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종 이외의 시설로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 적합으로 처리되는 경우 입주 가능.

2. 입주절차



- 1) 사업성 검토 또는 환경검토결과 탈락업체는 입주 불가능
· 사업성검토 적합판정 유효기간은 1년임.
- 2) 종별 사업장 구분 : 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2 참조

IV. 입주기업지원

1. 금융지원(중소기업에 한함)

- 금융한도 및 융자조건
- '89. 12. 31 이전 지정지구

구분	일반농어촌		추가농어촌		융자기간
	금융한도	연리	금융한도	연리	
· 시설자금	3억원이내 (소요의 90%까지)	8.0%	5억원이내 (소요의 90%까지)	7.5%	· 5년거치 5년 균분 상환
· 운전자금	1억원이내 (소요의 70%까지)	8.0%	2억원이내 (소요의 70%까지)	7.5%	
합계	4억원		7억원		

- '90. 1. 1 이후 지정지구

구분	일반농어촌		추가농어촌		우선농어촌	
	금융한도	연리	금융한도	연리	금융한도	연리
· 시설자금	2억원이내 (소요의 90%까지)	8.0%	3억원이내 (소요의 90%까지)	7.5%	5억원이내 (소요의 90%까지)	7.0%
· 운전자금	1억원이내 (소요의 70%까지)	8.0%	2억원이내 (소요의 70%까지)	7.5%	3억원이내 (소요의 100%까지)	7.0%
합계	3억원		5억원		8억원	

* 융자기간은 '89. 12. 31 이전 지정지구와 같음.

- 추가특별지원 : 정상조업중이고 이미 운전 자금 상환을 완료하였으며, 생산직 사원 (50인이상인 공장)의 현지주민 취업율이 70% 이상인 공장으로서 농의소득원개발에 기여한 기업에 대하여는 운전자금을 1회전 추가지원함.

· 대출결정 : 중소기업진흥공단(공산품제조업)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음식료품 및 농축수산물 가공업)의 사업성 검토를 거쳐 대출대상 적합여부 결정

· 대출기관 :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의환은행, 장기신용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음식료품 및 농축수산물 가공업에 한함), 은행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외국은행 국내지점을 제외함)

· 담보제공

- 중소기업인 경우 감정가액의 100% 대출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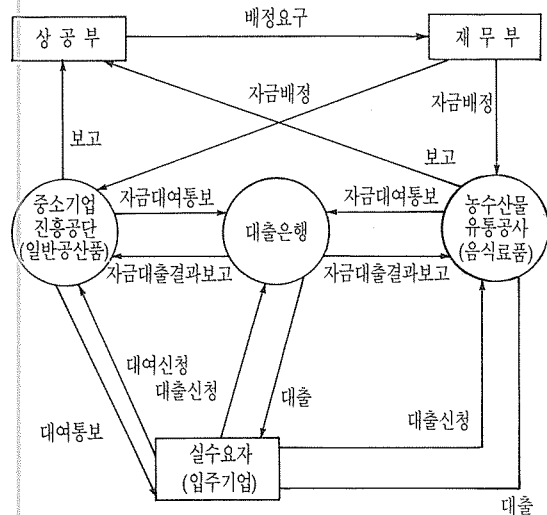
- 시설자금은 당해 시설의 후취담보 가능 (후취담보제공시까지 신용보증서 제출)

- 운전자금은 1억원까지 신용보증 가능

· 기타

- 입주후에는 농공지구 입주기업지원자금의에 같은 사유로 다른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음.

· 지원절차



2. 세제지원

· 국 세

- 소득세·법인세 감면(3년간 100%, 향후 2년간 50%)
- 투자준비금 손비인정(사업용 자산의 15%)
- 특별감가상각 100% 추가인정
- 대도시(수도권, 부산, 광주, 대전) 소재 이전공장 추가혜택
 - 지방이전준비금의 손비산입(공장시설가액의 10% 범위내)
 - 공장양도차익(대지, 건물 등) 및 이전보상금에 대하여 법인세, 소득세 면제
 -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투자세액 공제

· 지방세

- 취득세·등록세 면제
- 재산세 감면(초년도 100%, 향후 3년간 50%)

3. 행정지원(시장·군수의 사업계획 승인으로 생략되는 인·허가사항)

-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 공업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치 신고
- 지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별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방지 지정의 해제
-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사업시행계획의 허가
-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의 인가
-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 등의 허가
-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및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별채 등의 허가와 신고
- 사도법(私道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

의 개설허가

- 수도법 제13조 및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 소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등의 신축 등에 대한 허가·확인의 동의

4. 판로지원

- 정부수요물품 생산기업의 판납시 수의계약 가능(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2조)

5. 경영 및 기술지도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경영 및 기술지도 제공

V. 입주기업 유의사항

- 입주기업이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후 2년 이내에 최초 시제품이 생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효력을 상실함.
- 입주기업은 입주계약서상의 명시된 각종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VI. 농공지구 입주안내기관

1. 상공부 지방공업과

- (427-76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제2 종합청사 3동)

· 전화 : 500-2450, 503-9462

2. 경제기획원 산업1과

- (427-76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제2종합청사 1동)

· 전화 : 503-9071, 9072

3. 농림수산부 농촌소득과

- (427-76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제2종합청사 1동)

· 전화 : 503-7242

4. 도농어촌공업유치사무소

- ※ 위치 : (150-01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의 2 (중소기업회관 내)